

부산지방법원 2023. 12. 20 선고 2023나48933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부산지방법원 2023. 12. 20 선고 2023나48933 판결

부산지방법원 2023. 3. 24 선고 2022가단333244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명천

담당변호사 최종원

피고, 항소인 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재훈(소송구조)

변론종결 2023. 11. 22.

판결선고 2023. 12. 20.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23. 3. 24. 선고 2022가단333244 판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 B과 D, E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4 지분에 관한 2022. 3. 10.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피고 B은 D, E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2022. 5. 30. 접수 제6723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피고 C은 D, E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2022. 7. 28. 접수 제93238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4면 제4행 “해당한다.”를 “해당하고, D, E의 사해의사도 인정된다.”로, 제4면 제19행 “피고 C이”를 “피고 C의”로 각 고쳐 쓰고, 피고들이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들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신분법상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사해행위취소권 행사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또한 피고들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피고 B의 기여도를 반영한 것으로서 구체적 상속분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재산분할결과가 채무자의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다. 이때 지정상속분이나 기여분, 특별수익 등의 존부 등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다르다는 사정은 채무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등 참조). 또한, 민법 제1008조의2 제1항에 의하면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하여 특별히 기여하거나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자가 있는 경우 그 기여분의 산정은 공동상속인들의 협의에 의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기여자의 신청에 의하여가정법원이 심판으로 이를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와 같은 방법으로 기여분이 결정되기 전에는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피고가 된 상속인은 상속재산에 대한 자신의 기여분을 주장하면서 사해행위의 성립을 다룰 수 없다(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2다55631 판결 참조).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B이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을 정도로 망인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하여 특별히 기여하거나 망인을 특별히 부양함에 따라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피고 B에게 기여분을 인정하는 취지의 협의가 이루어졌거나, 가정법원이 피고 B의 기여분을 인정하는 내용의 심판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이효신, 판사 유현영, 판사 서호원

별지